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외 13명
- 나. 의안번호 : 제1060호
- 다. 발의일자 : 2019. 10. 15.
- 라. 회부일자 : 2019. 10. 22.

2. 제 안 사 유

-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의 제한, 교육·홍보의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억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의2).
- 나.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4조의4).
- 다. 시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함)이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이라 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음.
- 안 제2조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2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대상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19.11.)에 따라 공공부문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임.

- 안 제4조의4제3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회용품 제공’은 단어 그대로 서울시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즉 1회용품의 제공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서울시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 중 먹거리 장터, 김장담그기 행사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상위법인 「자축법」 제10조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19.11)’에서도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하도록 제도화’하는 권고 사항을 담고 있는 등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모든 1회용품의 제공 또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안 제4조의4제3항을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앞서 먹거리 장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행사 유형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친환경재질의 용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안 제4조의4제4항은 2019년 4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며, 안제4조의5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